

1. 2007~2012년 동안 매년 서울시립대학교 총 등록금 대출 신청자 수
(6년간 매년 2번씩 총 12번)

○ 2007~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자 수

학기	인원
2007년 1학기	930
2007년 2학기	1,018
2008년 1학기	1,037
2008년 2학기	1,020
2009년 1학기	1,036
2009년 2학기	907
2010년 1학기	1,063
2010년 2학기	998
2011년 1학기	990
2011년 2학기	902
2012년 1학기	549
2012년 2학기	397

* 청구인 요청원안은 대출 신청자 수이나, 대출자 수로 대체하여 작성

* 2012년 2학기는 '12.9월말 기준

2. 2007~2012년 동안 매학기 서울시립대학교 연체자 수(6년간 매년 2번씩 총 12번 / 신규연체자, 누적자 따로)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사유

- 청구인이 요청한 특정 대학(서울시립대학교)의 학자금대출 연체현황제공은 금융거래 명의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특정 대학의 연체율은 경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됨
- 아울러, 청구인의 이의를 제기한 “학자금대출 전체 연체율”은 특정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단순통계자료로 공개된 것임

* 붙임 : 관련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4호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3항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령 제5조**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